

□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미래에셋증권은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글로벌 기준(Best Practice)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및 재임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외이사가 다음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독립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1. 사외이사가 지난 5년 이내 당사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경우
2. SEC Rule 4200 Definitions 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당사 또는 당사 모·자회사로부터 연간 \$60,000 이상의 보상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3.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당사 또는 당사 모·자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4. 사외이사는 당사의 자문역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5. 사외이사가 당사 주요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계약 체결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6. 사외이사가 최근 3년 이내 당사의 외부감사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7. 사외이사가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